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04월 1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주 소	지연 신고사항
최**	최** 1976-06-01	강원도 속초시 청호로2길	무단전출
최**	배** 1962-03-07	강원도 속초시 청호로2길	무단전출
최**	배** 1988-02-23	강원도 속초시 청호로2길	무단전출
박**	박** 1978-03-28	강원도 속초시 아바이마을길	무단전입
한**	한** 1956-08-12	강원도 속초시 청호로7길	무단전출
오**	오** 1980-07-16	강원도 속초시 미리내길	무단전출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박 진 화 문의전화 : 033-639-2647)

2015년 04월 13일

청호동

